

2009년 8월 7일

라홀 쿨라 차관  
상공부 차관  
상공부  
인도공화국

쿨라 차관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제3장(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인도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은 법적으로 입증되고 이 서한에 첨부된 지도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km<sup>2</sup> 지역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상품에 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발급기관이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와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2009년 8월 7일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대한민국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제3장(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인도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은 법적으로 입증되고 이 서한에 첨부된 지도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개성 공업 단지의 9.9km<sup>2</sup> 지역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상품에 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발급기관이 제3.14조(영역원칙의 예외)와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에 따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라홀 쿨라  
상공부 차관